

제출시료의 양(제12조제3항, 제17조제4항, 제20조제4항 및
제22조의2제4항 관련)

제제 형태	시료량[ml(g)]
유제(油劑: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), 액제(液劑, 물약 제제)	200
유탁제(乳濁劑: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), 미탁제(微濁製: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)	
분산성액제(分散性液劑: 흩어지는 성질의 물약 제제)	
수면전개제(水面展開劑: 이동형 액체 제제)	
수용제	
종자처리수화제(水和劑)(액상의 제재를 포함한다)	
수화제(액상, 입상 포함)	
입제(粒劑)[수면부상성(水面浮上性: 물 표면에 떠오르는 성질)이 있는 제재를 포함한다], 대립제(大粒劑: 굵은 알갱이 형태 제제)	
캡슐현탁액	
분제(粉劑)(저비산의 제재를 포함한다), 분의제(粉衣劑: 종자에 가루 약제를 입혀 만든 제제)	
미분제(微粉劑)(수화성의 제재를 포함한다), 미립제(微粒劑: 아주 작은 알갱이 제제), 세립제(細粒劑: 가루 제제의 대체형으로 매우 잔 알갱이 제제)	
고밀도 멀칭제(덮는 형태 제제)	
그 밖의 새로운 제제 형태 또는 특수농약	보관 및 검사 가능량
농약활용기자재 제품	
원제	50

비고

1. 주성분이 두 종류 이상의 합제(合劑)인 경우에는 제재 형태별 시료량 외에 100ml(g)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.
2. 신규물질의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분석에 필요한 표준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3. 원제가 고활성농약(유효성분이 3% 이하인 제제를 말한다)인 경우에는 감량해 제출할 수 있다.